

의안번호	2202197
의 퇴 인	이수진 의원
회 답 일	2024.8.13.
추 계 번호	24B228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적용 범위)	<단서 삭제>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함 <후단 신설> － 이 경우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가사 사용인이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봄(제1항)	의무규정
		이 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함(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후단 삭제>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함.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음(제1항)	의무규정
		<삭 제> －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제2항)	의무규정
3	안 제5조(최저임금액)	<삭 제>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음.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함(제2항)	의무규정
4	안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삭 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의무규정
5	안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후단 삭제> －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6	안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삭 제>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 2.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안 제17조의2 (위원회 회의 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보존하 여야 함(제1항)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散會)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4. 출석위원의 발언 5. 표결 수 6.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함(제2항)	의무규정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8	안 제19조(전 문위원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 사항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조(적용 범위)	• 미대상 － 개정안의 시행으로 가사사용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배제 규정이 삭제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변화는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본문 참조
2	안 제4조(최저임 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 미대상 － 개정안은 최저임금 적용 시 업종별 차등 적용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임 －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으나, 실제 우리나라는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므 로 개정안이 시행되어도 국가재정의 추가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3	안 제5조(최저임금액)제2항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개정안은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나, 현시점에서 비용추계에 필요한 자료를 구체화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본문 참조
4	안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 미대상 － 개정안의 시행으로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배제 규정이 삭제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변화는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본문 참조
5	안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 미대상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국가재정의 추가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6	안 제13조(위원회의 기능)	• 미대상 － 현행법은 최저임금위원회로 하여금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업종별 차등 적용 규정의 폐지를 규정한 동 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7	안 제17조의2(위원회 회의록)	• 미대상 －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보존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시행되어도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재정의 추가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8	안 제19조(전문위원회)	• 미대상 － 현행법은 최저임금위원회로 하여금 필요시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조항은 업종별 차등 적용 규정의 폐지를 규정한 동 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2. 상세 사유

- (안 제3조) 개정안은 최저임금 적용 시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이 적용됨
 - 가사사용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될 경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던 가사사용인의 임금이 최저임금과 동일한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가사사용인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국가 재정소요 증가와 관련 있는 법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¹⁾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²⁾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³⁾, 「산업재해보상보험법」⁴⁾ 및 동법 시행령⁵⁾, 「임금채권보장법」⁶⁾,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⁷⁾, 「고용보험법」⁸⁾ 및 동법 시행령⁹⁾에 따라 국가 재정소요의 증가와 관련이

1)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가구내 고용활동

6)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고용보험법」

- 있는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채당금, 모성보호급여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가사사용인의 임금이 증가하더라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소요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령의 대상에 포함 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안 제7조) 개정안은 최저임금 적용 시 장애인에 대한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배제 규정이 삭제됨

- 장애인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적용될 경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던 장애인의 임금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현황)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장애인은 근로능력이 70% 미만인 장애인으로 일반기업체 취업이 어려워 직업재활시설에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장애인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은 대부분 직업재활시설(2019년 기준 85%)에 종사하고 있으며¹⁰⁾, 근로능력이 70%~100%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14,570명으로 이 중 8,975명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음

[표 1]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 수 추이

(단위: 명,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근로자	12,088	12,712	13,600	14,228	14,570	4.78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	7,812	8,016	8,393	8,741	8,975	3.53

주: 전국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제출한 자료를 취합 작성한 내용임
자료: 보건복지부

제8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10) 관계부처 합동,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 2019.12.12.

-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배제 규정의 삭제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변화는 다음의 이유로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첫째,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¹¹⁾을 통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전문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및 훈련장애인에 대한 훈련수당(월 10만원)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한 저임금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둘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¹²⁾을 통해 저임금 장애인 근로자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재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고용전환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사업주지원금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저임금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셋째,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근무하는 직업재활시설은 대부분 법인 소속이며, 해당 법인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할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¹³⁾¹⁴⁾이 지급되고 있으나,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기 때문에¹⁵⁾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과 연동되지 않는다는 점에서¹⁶⁾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규모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넷째,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던 장애인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이 증가할 경우 사업주의 임금 부담이 증가하여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고용의 유지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 및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의 재정지출이 축소될 것이라고 밝힘
 -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재정지출이 감소할 수 있으나, 이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¹⁷⁾에 따라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미대상 사유에 해당함

11) 코드: 1543 - 300

12) 코드: 1452-317

13) 코드: 1452-303

14)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재정을 지원하여 소규모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15) 장애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35~90만원 지원

16) 관계부처 합동,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 2019.12.12.

17)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생략)

- 다섯째,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하여 최저임금액의 일부에 대한 국고 등의 지원이 있을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개정조항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 여섯째,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던 장애인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이 증가할 경우 이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업재해보상급여 등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법안비용추계는 해당 법안이 재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만을 추계하므로 2차적으로 발생하는 재정적 영향은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됨¹⁸⁾
 -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배제 규정의 삭제될 경우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변화는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안 제5조제2항) 현행 「최저임금법」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안은 수습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수습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음
 -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중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인 근로자의 임금 인상으로 인건비에 대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 수와 이들의 임금수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비용추계에 필요한 자료를 구체화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18)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원리와 실제: 지출편」, 2012.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직무대리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박인재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